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복지법인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공갈·사기 추가〉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722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사회복지법인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공갈·사기 추가	3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72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4. 30.
- (3) 회 부 일 : 2026. 5.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상 횡령·배임죄를 범한 경우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또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전과가 있는 사람의 사회복지 분야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건전성·투명성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형법」상 사기·공갈죄를 범한 경우도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에 해당하므로 횡령·배임죄를 범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건전성·투명성 강화를 뒷받침하고자 함.

또한, 지방보조금의 거짓·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지방재정법」 제97조가 2021년 1월 21일 삭제되면서 동 처벌 규정은 같은 시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으므로, 현행법상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제97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1호의7).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회복지법인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공갈·사기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사기·공갈죄(「형법」 제39장)를 범한 경우를 추가하고, 「지방재정법」 제97조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된 사실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1호의7).

현행	개정안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 1의6. (생략)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1. ~ 1의6. (현행과 같음) 1의7. -----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 「형법」 제28장·제39장·제40장-----

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 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 다. (생략) 1의8. ~ 3. (생략) ② (생략)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1의8.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결격사유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제35조 및 제35조의2를 통해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 상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의 결격사유 >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종사자
제1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5조(시설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5조의2(종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개정안은 「형법」 상 사기·공갈죄를 범한 경우를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는 사기·공갈죄 역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횡령·배임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하여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사기·공갈죄 관련 「형법」 조문 >

「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1)에 따르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의 공정성·투명성·적정성을 도모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현행법이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형법」 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재산상 이익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의 사회복지 분야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동일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인 사기·공갈죄를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형법」 제40장 중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²⁾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까지 일률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취업 제한 사유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임.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형법」 제39장 중 제348조의2의 편의시설부정이용죄³⁾ 역시 사기·공갈의 죄에 포함되기는 하나 비교적 경

2)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

미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복지법인 임원 등의 결격사유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현행법은 「지방재정법」 제97조 위반행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2021년 1월 21일 삭제되었고, 관련 조항은 같은 날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존 「지방재정법」 제97조의 벌칙 규정을 정비하면서,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위조·변경·훼손·말소 행위, 업무상 취득한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누설 행위, 권한 없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변경·훼손 및 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무단 처리 행위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담보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도 명시하고 있음.

□ 당초 「지방재정법」 제97조 위반행위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취지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 주요 보조사업자로서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추가된 벌칙 위반행위 역시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적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현행법이 삭제된 「지방재정법」 제97조 위반행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비교 >

「지방재정법」 (법률 제17892호 이전 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 제28조의4(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② 누구든지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제28조의4(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② 누구든지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처리하는 행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

3.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것 보고를 한 자 *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제29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후원금·보조금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업의 특성상, 결격사유의 효과를 강화하여 규정하는 범죄에 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를 포함하는 취지에 공감함.

다만, 제39장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죄) 위반시에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한다면,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구)지방재정법」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의 변경으로 일부 추가되는 결격사유가 있으나, 지방보조금 관련 별도의 근거법률이 새로이 제정('21.1.12.)된 법 체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이견 없음.

-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 및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 사기·공갈은 사회복지사업의 신뢰 기반을 직접 훼손할 수 있는 재산범죄로 횡령·배임과 함께 결격사유로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 규제 확대보다는 이관된 법령 체계에 맞추어 법체계를 정비하는 성격이 강함.

- (한국사회복지사업협회) 본 개정안은 사기·공갈죄를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타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조치로서 찬성함. 다만, 종사자의 취업 및 고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임을 고려, 유사 법령을 참고하여 벌금
기준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적절함.

문 의 처
02)6788-5497